긴급입찰 사유서

☐ **계약건명: 해양경찰KICS 수사지원 AI 모델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법적근거**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조제1항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해양경찰KICS 수사지원 AI 모델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ㅇ 사업예산 : 299,000,000원(부가세 포함)
-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ㅇ 사업내용
  - 해양경찰 수사업무에 특화된 AI 수사지원 플랫폼 구축
  - KICS 및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과 AI 플랫폼 간 수사정보 연계 및 활용체계 구축
  - 해양수사 관련 법령·판례·수사매뉴얼·업무편람·수사사례 등을 활용한 RAG 기반 해양수사 지식DB 구축
  - 사건기록 및 수사자료에 대한 AI 기반 요약·분석 및 핵심정보 추출

☐ **긴급입찰 요청 사유**

-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나, 동법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1의2호,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 ㅇ 해당 사업은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해양경찰청 수사업무의 연속성 및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긴급입찰을 요청함

2026. 10. 27.

해 양 경 찰 청 장